

의안번호	2214620
의 퇴 인	박정현의원
회 답 일	2025.12.3.
추 계 번호	25B6455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의2 (면접 교통비의 지급)	구인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가 면접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교통비의 지급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의2(면접 교통비의 지급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참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가 면접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인자로서 지급하는 교통비’와 ‘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인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’으로 구분됨
- 이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인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¹⁾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기편성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- 다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는 구인자를 지원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 교통비의 지급 기준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교통비 지원 규모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며, 지원금의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또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인자의 교통비 지급 건수와 지원 단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1)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적용범위)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